



윤리강령, 세밀하게 세우고 제대로 실천해야

글 / 이 민 호 (KBMI 윤리경영연구센터 소장)

우 리 사회의 지도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국회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윤리수준을 보면 다른 분야의 상황이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분야에 세밀한 윤리강령 제정과 이행체계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윤리특위 22분 일하고 5억 쓰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라는 위원회가 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공익 우선의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의 솔선수범, 적법절차 준수로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 공사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 5개 향으로 구성된 국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심사와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윤리특위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4년간 22분 일하고 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4년간 7번 회의를 개최하여 단 한번 22분간 의원징계에 관한 실질회의를 열었고 나머지 6번은 간사선임 등 특위 운영과 절차에 관한 회의였다고 한다.

윤리특위가 국회 안의 '포청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국가예산이나 낭비하면서 달랑 1페이지 짜리 윤리강령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겸업이 뭐가 문제나?'

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출신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는 국회법 제정이 논의되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거셌다. 그들은 본업인 변호사업을 수행하는데 국회의원직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것과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국회의원이 변론을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뢰인은 이러한 변호사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업체 임직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각종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책임을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상류층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규제하는 윤리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윤리강령은 자기규제를 위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그곳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와 원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규칙을 담은 것이 윤리강령이다.

그리고 이 윤리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윤리시스템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강령이나 행동규칙을 마련해봐야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벤처기업들도 윤리경영 체계도입을 서둘고 있다. 지금 윤리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할 때다.

(문의 : KBMI윤리경영연구센터(www.kbmi.or.kr) 02-557-1747)